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①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 요건 중 실질적 부양의 의미에 관한 건

SAMPLE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 요건 중 실질적 부양의 의미에 관한 건

질문요지

Q.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지만 세무서신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받아도 되나요?

사례1 부모님이 재산과 금융자산이 많고 사채이자도 많으나 세무서 신고소득은 없는 경우

사례2 부모님이 주택임대소득이 많으나 세무서에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례3 부모님은 집도 있고, 월 공무원연금을 250만원을 받고 있으나 세법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례4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크게 짓고 있어 소득이 많아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만 세법상 농업소득이 비과세라 세무서에 신고 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Q.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아도 부모님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 질문에 대한 검토보고서 ■

회원님의 요청에 따라 위 제목 건에 관하여 검토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공제여부를 결정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절세·조세회피·탈세·조세포탈의 개념

답변에 앞서 세테크를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 글은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의 칼럼내용입니다.

납세자의 세테크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세(tax shelter), 조세회피(tax avoidance), 탈세(tax evasion), 사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탈세(tax fraud), 즉 조세포탈 4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절세와 탈세다.

절세는 세법이 허용한 적법행위인데 부모님공제를 소득이 높은 형이 공제받는 것이나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공제를 적절히 나누어서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대표적이 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은 거짓기장, 조작, 은폐를 통해 세금을 안낸 경우이다. 대법원은 2016년 선박왕 사건에서 조세피난처 국가에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것만으로는 조세포탈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탈세는 사기적인 방법은 없지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법해석의 차이로 인해 추징세액이 나온 경우이다. 예컨대 변호사가 1,000만원 접대비를 지출하였지만 1,000만원 모두를 비용인정하지 않고 인정한 한도 내에서만 비용인정하는 경우이다.

세법은 명확하지 않고 복잡성과 모호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법해

석의 다툼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강호동씨가 후배들과 밥 먹은 것이 업무적으로 먹은 것인지, 사적으로 먹은 것인지 판단이 어렵고, 거래가 없어 시가를 알 수 없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으레 추징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탈세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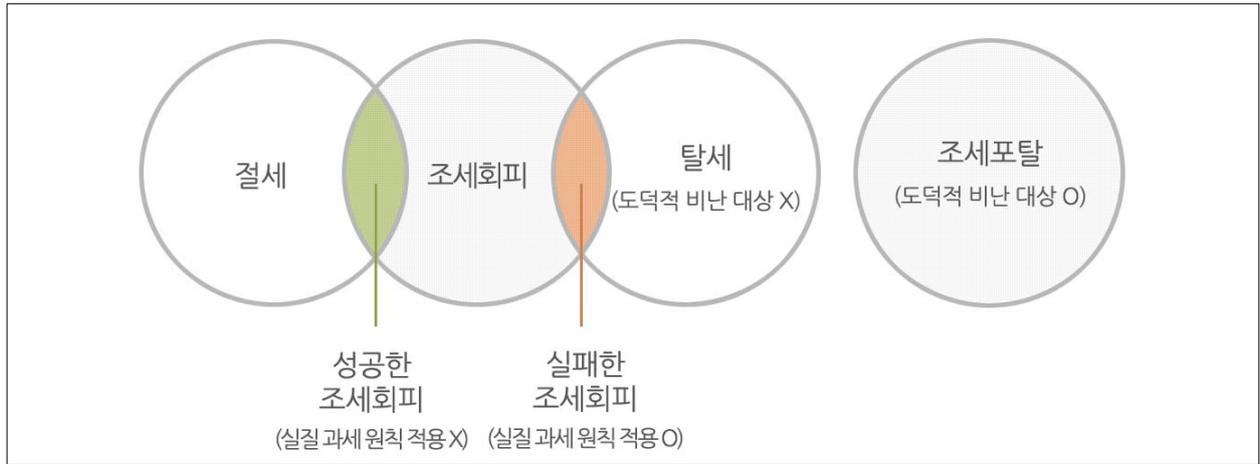
강호동씨가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 받았다”는 것만 확인되었고, 탈세를 한 것인지 조세포탈을 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들이 강호동씨를 비난하는 것은 탈세와 조세포탈의 개념에 대해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조세회피란 입법취지로 보아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한다. 미대법원은 1935년 그레고리 v. 헬버링판결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려는 법적 권리는 절대 문제시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법치주의국가에서 법대로 세금을 부과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빠르게 변하는 경제현실을 제때 따라잡지 못하는 세법의 허점과 세법을 완벽하게 만들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는 납세자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납세의무자로서는 조세부담률주의의 토대 위에서 조세의 부담을 제거하거

【절세·조세회피·탈세·조세포탈】



나 완화하는 거래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장행위나 위법한 거래로 평가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선물환거래 매매차익인 엔화 스와프예금 수익이 이자소득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행동도 불법적이지 않다면 유효하다.”며 선물환계약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물환거래에 따른 외환매매차익은 예금의 이자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며 “차익을 이자소득세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회피 행위라고 하여 세금을 부과하려면 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세청에 패소판결을 하였다. 정부는 패소판결이후 세법을 개정하여 이자소득임을 뒤늦게 명확히 규정했다.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가 절세가 된 사례다.

고 최진실씨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어머니에게 매니저비용을 97년은 3.1%, 99년 14.5%를 지급하였다. 국세청은 매니저비용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였다면서 부인하였는데, 대법원은 조세회피 행위를 인정하여 국세청 승소판결을 하였다.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가 탈세가 된 경우다.

조세회피 노력이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

하면 탈세가 된다. 이 차이는 크다. 그래서 테니스 힐리 전 영국 재무장관이 “조세회피와 탈세는 감옥 벽의 두께 차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 둘의 구분이 쉽지 않고 조세회피가 성공할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회피를 도와주고 돈을 버는 사람이 세무대리인과 변호사다.

미국 애플사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거액의 탈세를 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세무조사는 매우 운이 나빴던 경우이고 우리는 법에 저촉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우리는 아일랜드에서 35년 동안 법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당당히 말했다. 그 이유는 유능한 기업인이라면 조세회피개념을 이해하고 법인세 최소화 전략을 세워 이익을 극대화하여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조세회피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인은 멍청한 기업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절세,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의 개념을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진보를 위해서 중요하다. 강호동 탈세 논란에서 보듯이 “세무조사를 받고 추정세액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조세포

탈이 아닌데도 대중들이 조세포탈로 오해하여 강호동씨를 비난하는 것은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으로 큰 문제이다. 동일한 선상에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조세포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임에도 대중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 조세포탈로 비난받아야 한다.”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조세회피는 합법적이지만 법의 정신(입법취지)에 위배되고,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조세형평성을 야기하며, 애플이 덜 낸 세금을 가난한 일반 국민들이 더 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국민이 조세회피에 시간을 덜 쓰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다. 파나마 문건에 나오는 사람 대부분이 좋은 정부를 가지지 못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 연말정산에서의 조세회피

연말정산에서 조세회피란 세법은 항상 명확하지 않고 복잡성, 모호성, 추상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법해석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소득세법의 “생계를 같이 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장애인으로 본다.”, “일시 퇴거” 라는 추상적인 용어의 해석이다.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므로 세법의 해석이 모호할 때는 세법의 해석을 국고적인 입장에서 할 수 밖에 없다.

국세청의 질의 회신 내용인 예규나 예규 중 중요한 내용을 모아 놓은 기본통칙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따라서 납세자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송 시 승소가능성, 세무조사 위험, 가산세의 크기, 형사처벌 가능성, 사회적 규범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따를지, 안 따를지 결정하면 된다.

이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연말정산

제도의 근본적인 약점, 법적인 공제요건의 실효성 문제, 법의 부당성 등이 있다. 이런 내용을 종합검토 한 결과 “세금을 안내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고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된다. 연말정산제도는 다음과 같이 근본적인 약점이 있는 제도이다.

■ 연말정산제도의 근본적인 약점 (부당공제 시 낮은 가산세 문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매달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고 근로자 개인이 소득세 정산(신고)을 사업자와 동일하게 직접 한다. 우리나라 연말정산 제도는 정부와 납세자 입장에서 편리한 측면이 있지만 조세회피를 막는 데에는 단점이 많다.

연말정산 부당공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세신고자가 불성실신고 한 경우와 동일하게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국세청은 회사가 원천징수를 잘못된 경우에 부과하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최고 10%)를 부과하고 있다.

☑ 소득세 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 미납부세액의 10%+ 미납부일수에 연 10.95%가산세 추가
- 부당과소신고 : 미납부세액의 40%+ 미납부일수에 연 10.95%가산세 추가

재직자와 퇴직자, 부당공제자와 둘이상의 회사에 소득이 있는 경우의 이중근로소득자가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를 달리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국세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부당공제 시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납부 하게 되거나 개인에게 직접 고지서를 고지하여 세금

을 추징을 하게 되면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법적근거도 없이 수십 년 동안 불법적으로 회사에 수정신고를 강요하면서 근로자에게는 낮은 가산세를 적용하였다. 국세청과 일반회사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것이다.

또 연말정산을 하는 1700만명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근로자 개인이 조세포탈로 형사처벌이 된 사례가 없는 등 악의적인 조세포탈에 대해서도 강제적인 제재가 허술하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세금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조세포탈의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탈루세액도 적고 사업자의 탈세가 만연한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적인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해도 “회사에서 제대로 안내를 안 해줘서 나는 몰랐다.”고 변명의 여지를 주는 약점이 있는 제도이다.

2. 검토의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제1항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

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 주거 형편상 별거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나,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를 말함 (법인46013-4265, 1999.12.10)

2 부모님 공제 요건

부모님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① 연간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이하 일 것. 단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

【부모님 공제요건】

1.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 나이가 만 60세 이상
 3. 다른 형제가 공제 X
 4. 생계를 같이 할 것
 - ① 같이 거주 : 생계를 같이 O
 - ② 따로 거주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자녀가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한다.
- * 배우자·자녀·부모는 따로 살아도 되지만 형제자매는 같이 거주해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액을 합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외)조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일 것. 다만 장애인공제대상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암·중풍·치매·희귀난치성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만 70세 이상은 경로우대공제가 추가로 가능.

③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단, 부모님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는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소득공제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공제 가능.

④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할 것.(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할 것)

〈이하 생략〉

SAMPLE

본 검토의견은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 공제여부는 개인이 판단하여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면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공개된 게시판 등에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본 내용의 저작권은 한국납세자연맹에 있습니다.